

전과에 관한 규정

제정 1999.02.09.
개정 1999.12.15.
개정 2000.04.12.
개정 2000.08.30.
개정 2004.11.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6.13.
개정 2014.11.06.
개정 2018.06.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제16조2의 ③항에 의한 교내 전과의 자격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전과의 시기는 1학년 2학기초 및 2학년 초에 한하며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3조(범위) 전과대상 학과의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되, 해당학생의 적성, 학업계획서, 지도교수와의 면담 결과등을 기준으로 허용한다. (단, 간호과 유아교육과는 제외)

제4조(정원) 전과의 정원은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30%의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제5조(자격) 전과의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방법) 전과 신청자가 전과 정원을 초과한 경우 전입학과 면접점수순, 평점평균순, 취득학점순, 연장자순으로 선발한다.

제7조(제한) 아래의 경우는 전과를 제한한다.

1. 삭제
2. 삭제
3. 편입학자
4. 전과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8조(수강신청) 전과한 학생의 수강신청은 전출학과에서 인정된 학점을 제외한 소정의 잔여과정을 전입학과 재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이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9조(절차) 전과의 절차는 학사지원팀에 “전과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전과한 학생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과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총장, 학사운영처장,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전과의 자격등에 관하여 심의하며, 전과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도 위원회의 심의에서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의 학과 운영등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전공) 입학당시 분리 모집한 학과의 전공간 이동도 이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